

# 감 사 관



# 감사관 조치결과(계획) 총괄

## □ 지적사항별

(단위 : 건)

부 서 별	지 적 사 항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계	5	-	5	-
감사관	5	-	5	-

## □ 조치사항별

(단위 : 건)

부 서 별	조 치 결 과 (계획)				
	계	완 료	조치중	시기미도래	불 가
계	5	5	-	-	-
감사관	5	5	-	-	-



# 【 감사관 】

## 목 록

- 상급기관 감사 관련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슈 자제
- 자체감사 철저를 통한 집행부 자정작용 체계 확립
- 공무원 근무태만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후속조치
-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의 자체 감사 실시 요청
- 시민 공감대 형성 없는 행정력 낭비 근절

## 상급기관 감사 관련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슈 지제

### 지적사항

-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있기 전 시의 보다 유연한 대처로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현재 자치사무 감사에 관하여 우리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심판(2건)이 진행 중임.
- 해당 권한쟁의심판은 경기도의 2020년 특정감사와 2021년 종합감사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우리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어 청구된 것으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 사항임.

### 향후계획

- 시의 보다 유연한 대처로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주의

# 자체감사 철자를 통한 집행부 지정직용 체계 확립

## □ 지적사항

- 동일 지적사항이 빈발하는 경우 강한 후속조치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 제고
-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공익제보 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선제적 역할
- 생일파티 건 등 내부조직 파행에 대한 적극적 감사를 하되, 제보자 보호

##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 조치결과 : 완료

- 반복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후속조치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교육 및 책자발간을 통해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특히 올해는 처분요구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을 장기간 미처리하고 있는지, 장기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의 적정 여부, 처리시기를 놓쳐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후속조치의 실행력을 제고하겠음. 또한, 감사결과 동일부서(기관)·동일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계획임.
-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시정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남양주시 감사 규칙」 등에 따라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 후 사안에 따라 경위를 모니터링 하거나 특정감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익제보 건은 익명제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접수하여 사안에 따라 자체조사를 하거나 공직감찰 시 중점사항으로 활용하고 있음.
- 내부조직 파행 건은 익명제보시스템 등 제보 접수 후 사안에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익명제보시스템을 이용한 제보자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고 그 외 경로의 제보자 및 면담 대상자들에게 폭여 발생할지 모르는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건전한 공익제보 문화 형성을 위하여 개별 인적 사항은 문서에 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 향후계획

- 2022년 연간 감사계획 및 공직기강 감찰계획 일정에 따라 자체감사(감찰) 실시 철저

일련번호	31
------	----

# 공무원 근무태만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후속조치

## □ 지적사항

- 사적으로 단체장 법원용무로 출장한 공무원의 적절한 후속조치
- 근무태만 의문제기를 한 전략기획관 임기제공무원의 적절한 후속조치

##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 조치결과 : 완료

- 위 지적사항의 출장 건은 지자체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서실장의 공무와 관련된 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적법한 출장으로 판단됨.
  -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로는 관련 공판 참석 시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등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확인됨.
- 전략기획관 임기제공무원의 업무 및 복무관리 수시감찰
  - 공직감찰 시 중점관리대상으로 상정하여 집중감찰 실시
  - 그간 집중감찰 결과, 법령에 의한 직무유기(근무태만)에 이른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음.
    - ※ 참조판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향후계획

- 2022년 공직기강 감찰계획 일정에 따라 자체감사(감찰) 실시 및 중점관리 사항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의 자체 감사 실시 요청

### □ 지적사항

-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예: 청학밸리리조트, 1910리멤버, 시청사 증축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시는 본청·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업소·도시공사 등에 대하여 2~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일상감사·계약 심사와 현장 중심의 공공시설물 컨설팅 감사를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종합감사 및 일상감사, 컨설팅 감사를 통해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도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특히, 「남양주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총사업비 중 시비가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 투자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에 대한 사항 등은 그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일상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음. 또한, 공사비 5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장은 현장 중심의 공공시설물 컨설팅 감사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 향후계획

- 2022년 연간 감사계획 및 공직기강 감찰계획 일정에 따라 자체감사(감찰) 실시 철저

## 시민 공감대 형성 없는 행정력 낭비 근절

### 지적사항

-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현재 자치사무 감사에 관하여 우리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심판(2건)이 진행 중임.
- 해당 권한쟁의심판은 경기도의 2020년 특정감사와 2021년 종합감사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우리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어 청구된 것으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 사항임.

### 향후계획

- 향후 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